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가. 발의일자 : 2021. 6. 1.
- 나. 발 의 자 : 오세광 의원 외 4명
- 다. 검토일자 : 2021. 6. 4. ~ 6. 8. (5일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16조의2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 다.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8조)
- 라.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구민참여단 구성,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 바.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3조)

아. 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서구의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구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한시적 비상설 위원회인 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갈등이 야기되는 공공사업의 특성상 공론화 실시 여부에 대한 반복적인 논란발생과 무분별한 공론화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공론화 대상 여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